Q & A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범죄적 성격 : 비인도적 전쟁범죄이다. 비인도적 범죄란?

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제6조 C항 및 일본이 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및 양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

내용)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행해진 살인, 잔혹행위,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를 범행지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

참고) 전쟁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발적인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조직적 기획과 수행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음.

※ 92년 1월 11일 일본 방위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모집을 직접 지시·감독·통제했음을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일본군의 공식문서 3건이 발견됨.

93년 8월 일본정부의 제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본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공식 인정함. 따라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2. 비인도적 범죄라하더라도 50년이 훨씬 지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 비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시효가 없이 여전히 처벌가능하다.

근거)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법령시효비적용에 관한 협약(1968. 11. 26 유엔총회 채택, 1970. 11. 11 발효) : 국제관례법으로 정착됨.

내용) 법령시효비적용 범죄 : 전쟁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1945년 제네바협약에서 나열된 중대한 침해죄, 전시 또는 평화시에 범해진 비인도적 범죄, 인종파멸정책에서 결과된 무장공격에 의한 퇴거 또는 점령과 비인도적 행위들, 집단학살 범죄 등(뉴렘베르크 국제재판소 헌장에 규정된 범죄, 1046년 2월 13일 유엔총회결의3(1), 45년 12월 11일 유엔총회결의 95(1)에 포함된 범죄)으로 해당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도 범죄로 간주된다.

의미) 이 협약은 나찌기간동안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인 범죄의 처벌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전쟁범죄와 비인간적 범죄에 적용되며, 당사국은 범인인도 등에 필요한 모든 입법적 또는 기타의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적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

3. 일본은 법령시효비적용협약에 가입했는가?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구속력도 갖는가?

※ 일본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관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근거) 1. 뉴렘베르그(Nuremberg)원칙 제11조에 대한 국제법률위원회의 논평

'국제범죄를 범한 사람은 책임이 있고, 국내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보통 말하는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우위를 뜻한다'

2. 일본 헌법(제98조 2항) '일본이 서명한 조약들과 '확립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국인 한국헌법(제6조1항), 대만헌법 제141조, 인도헌법 제51조, 버마 헌법 211조, 필리핀 헌법제 2조3항은 국제법에 대해 일본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일시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책임자 처벌의 일부분이다.

참고)1. 미국의 '국적 및 이민법'의 관련 조항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정부, 나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의 정부, 나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한 외국인"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나치전범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국외로 추방된다. 특정국가의 요청에 의해 송환되기도 했다.

2. 미국은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지난 96년 12월 3일 731부대 생체실험, 위안부강제동원에 가담한 일본인 전범에 대한 출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8.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실행을 위해서는 개해자 명단, 증거 등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성과 연계, 일본정부의 진상조사 등과 병행되어 진행될 것이다. 우리정부의 외교력과 직결된 문제이다.

참고) 일본에서는 '전후처리의 입법을 요구하는 법률가, 지식인 모임'모임이 결성되어 조사위원회설치법안, 「종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잠정조치금을 지급하기위한 법안 등을 추진중이다.

9.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법률아닌가? 적용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 개정 신설안 제11조1항제7호는 특정국가의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 특정범죄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근거하면 일본, 중국, 한국 등지에서 온갖 잔혹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 전범은 물론이고 일본제국주의의 점령하에 있던 만주국, 대만 등지의 정부 하에서 일했던 자, 일본제국주의와 동맹관계에 있던 나치, 이탈리아의 전범들도 입국금지대상이 된다.

그리고 8호는 일제식민지 시기의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8호. 기타 1호 내지 7호의 1에 준하는 자)

10. 국회의 결의문 채택의 의미와 결의할 내용은?

의미)

- 일본군'위안부'피해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일제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책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범죄성이 인정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국회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명은 정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이외에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아시아에서 유사한 인권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여성인권 신장의 역사적 전환이 될 것이다.
-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만행을 역사적으로 재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잠정적인 지원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 같은 입장이다.

4.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법적 보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일본군전범의 재판의 문제점)

1. 동경재판과 연합군에 의한 전쟁범죄재판에서 일본과 그 피해국들은 전쟁범죄와 비인간적 범죄를 처벌한 적이 없다.

2. 일본에 의한 피해국들은 극동국제군사법정과 그 이후의 일본전쟁범죄 재판 모두에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합군보다 더 길고 심한 고통을 당한 위안부 등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네델란드의 위안부관련 일본군 가해자들은 처벌됨)

한-일협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국제법률가위원회 :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문맥을 보아서 불법 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전 '위안부'피해자에 대해 명백히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

2. 한-일협정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65년 한일협정은 책임자 처벌문제를 다루지않고 있으며,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피해자 개인이 일본정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남아있다'고 함(정대협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아일 12000-475, 아일 22220-422)

※ 전범재판과 한일협정 등에서 '위안부'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 개인의 배상권 유효하며,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5. 비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예

1)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 국가

이스라엘 : 1950년 나찌와공모자법 제정 : 관련자의 지속적인 처벌

영국은 1991년에 전쟁범죄법령을 제정하고 나찌전범을 처벌하고 있다.

호주도 2차 대전 후 법령을 제정하고 나찌전범을 처벌.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케냐, 나이지리아, 폴란드, 우간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소련, 미국

2) 시효는 있으나 무죄방면금지를 위한 특별조치 입법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독일

6.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하였는가?

※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하는 것이 옳다.

7. '위안부'범죄자 처벌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관계?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정부가 관련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둘째, 생존해 있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셋째,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에 준하는 배상을 실시하여 인권을 회복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하기 위한 역사교육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

결의내용) 일본정부가 '위로금'지급을 철회하고 96년도 UN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

▲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96년 제52차 회의)

1.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조직된 위안부 체제는 국제법상의 의무위반 :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2.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마련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 : 행정재판소 조직할 것
3. 2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의 위안소 및 기타 관련활동에 관한 모든 정부소유 기록 및 자료들을 완전 공개할 것
4. 피해자 개개인에게 서면을 통해 공개사과할 것
5. 교과교육과정을 바로 잡아 이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
6. 2차대전 중 위안부의 징집과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했던 범죄자를 가능한 한 색출하여 처벌할 것

참고)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청, 법무성, 노동성, 후생성, 대장성의 문서보관소에 위안부관련 문서들이 계속 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